

경상북도 고등학교 현장실습 운영 및 지원 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1. 소관기관 및 부서: 경상북도교육청 정책국

2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: 2024년 2월 16일, 손희권 의원 외 10명

나. 회부일자: 2024년 2월 19일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

○ 제345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

(2024년 2월 27일 상정,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·답변, 토론, 의결)

3. 제안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설명자: 손희권 의원

나. 제안이유

○ 현장실습의 교육적 가치와 학습권이 보장된 학습 중심의 현장실습 추진으로 현장실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「직업교육훈련 촉진법」 미준수, 불합리한 처우 등 문제를 사전 예방하여 현장실습생의 안전한 실습 여건을 마련하고 현장실습생의 취업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제정하고자 함.

다. 주요내용

- 교육감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3조)
- 현장실습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4조)
- 현장실습 운영기준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5조)
- 현장실습 운영계획의 수립·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6조)
- 현장실습운영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7조)
- 현장실습의 방법, 산업체 발굴 및 선도기업 선정, 현장실습계약 체결, 현장실습 점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8조~제12조)
- 학생의 안전보장, 현장실습의 평가, 행정적·재정적 지원, 협력 체계 구축, 표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13조~제17조)

4. 검토보고의 요지(수석전문위원 이경형)

가. 제안취지

- 본 조례안은 고등학교 현장실습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현장실습의 교육적 가치와 안전한 현장실습 환경을 마련하고 직업에 대한 소양 및 능력을 계발하여 학생의 취업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내용

- 본 조례안은 총 17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, 먼저 안 제1조는 고등학교 현장실습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현장실습의 교육적 가치와 안전한 현장실습 환경을 마련하고 직업에 대한 소양 및 능력을 계발하여 학생의 취업역량 강화에 이바지하려는 목적과 안 제2조부터 제3조까지는 정의와 교육감의 책무에 관해 규정함.
- 그리고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기본방향, 현장실습의 운영기준 등과

현장실습 운영계획의 수립·시행에 관해 규정하고 있음.

- 안 제7조는 현장실습운영위원회 구성·운영에 관해 규정함.
- 안 제8조부터 제14조까지는 현장실습의 방법, 현장실습산업체의 발굴 및 선정, 사전교육의 시행, 현장실습계약의 체결, 현장실습 점검, 학생의 안전보장, 현장실습의 평가 등에 관해 규정함.
- 안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는 행정적·재정적 지원,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, 표창 등을 규정함.

다. 종합의견

- 학생들이 사전에 산업안전과 권익침해 예방교육 수료 후 안전이 검증된 산업체에서 직업교육훈련을 받고 있으나, 현장실습 도중 학생이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현장실습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.
- 현장실습생은 산업체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근로자이기 전에 배우고 공부하는 학생 신분이므로, 근로 중심으로 운영되던 기존의 현장실습 방식을 넘어 이제는 교육적 가치와 학생들의 학습권이 보장되는 학습 중심의 현장실습으로 개선이 필요함.
- 따라서 본 조례안은 제정 취지 및 주요 내용과 구성 체계가 상위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고, 집행부 협의와 조례안 예고 등의 입법 절차를 준수하였으며, 고등학교 현장실습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에 필요한 체계적인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해 합당한 입법 조치라고 사료됨.

5. 질의 및 답변 요지: 생략

6. 토론요지: 「없음」

7. 수정안의 요지: 「없음」

8. 심사결과: 원안가결

9. 소수의견의 요지: 「없음」

10. 기타 필요한 사항: 「없음」